

## 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실용신안권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실용신안등록증 발급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이 실용신안권자에게 발급하는 실용신안등록증을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## 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18. 3. 15. ~ 4. 25.) 결과, 특기할 사항  
없음

##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법 제19조제1항”을 “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「특허법」 제86조제1항”으로, “발급”을 “발급(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법 제19조제2항”을 “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「특허법」 제86조제2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발급”을 “발급(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)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제120조의6까지”를 “제120조의7까지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11조(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)</p> <p>①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<u>법 제19조 제1항</u>에 따라 그 실용신안권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증을 <u>발급</u>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 략)</p> <p>③특허청장은 <u>법 제19조제2항</u>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증을 정정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기재·날인하고, 해당 실용신안등록증에 편철을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.</p> <p>④ 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외국어로 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의 실용신안등록증(이하 “외국어실용신안등록증”이라 한다)을 <u>발급</u>할 수 있다.</p> <p>1. ~ 8. (생 략)</p>	<p>제11조(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)</p> <p>①----- ----- <u>법 제20조</u> <u>에서 준용하는 「특허법」 제86</u> <u>조제1항</u>----- ----- <u>발급(전자문서에</u> <u>의한 발급을 포함한다)</u>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----- <u>법 제20조에서</u> <u>준용하는 「특허법」 제86조제</u> <u>2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발급(전자문서에 의한 발급</u> <u>을 포함한다)</u>--.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



서(명세서에 발명의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”는 “명세서(명세서에 고안의 설명을 적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)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”로 보고, 같은 규칙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”를 각각 “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”로 본다.

②·③ (생략)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②·③ (현행과 같음)